

펴낸날 일한구역 / 펴낸날 1월 20일 /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펴낸이 최영애 / 만든이 윤수연 이수지 이숙경 이진희 / 편집 도전 21

나눔터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3
여기는 상담실 열림터 내답카 실태와 대책	5
조사와 연구 성폭력과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8
기획 '피어라 들꽃'에서 만난 사람들	9
길을 따라서 결혼피로연에 다녀와서	11
몸 이야기 노인의 성	12
특집 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	13
성문화 읽기 '내일로 흐르는 강'이 말하는 가족	14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법정지원모임	15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6년 8월에서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제9기 상담원교육 / 제6기 지킴이(야간상담원)교육 / 성폭력추방을 위한 서울시민대회 / 기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 운영위원회 / 96년 후원의 밤-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금마련 만찬회 / 세계성폭력 주방주간 세미나 개최-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1 :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

동아시아 여성포럼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여성 NGO 위원회의 주관으로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 이행과 21세기를 향한 동아시아 여성의 활동계획 수립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동아시아 7개국에서 450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상담소를 대표하여 최영애 소장과 장윤경 총무가 참가하였다.

제6기 지킴이(야간상담원)교육

야간상담원 교육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주에 걸쳐 총 18강좌로 진행되었다. 총 56명의 신청자가 교육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수료한 사람은 총 44명. 기존 지킴이가 3명 포함되어 순수 신규 교육생 중에서는 41명이 수료하였다.

성폭력추방을 위한 서울시민대회

지난 9월 7일 종묘공원에서 전 신양중 교장



황수연씨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성폭력 추방을 위한 서울 시민대회를 열었다. 여기에 서울시민, 중·고등학생, 대학생, 여성·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성폭력 추방의 염원을 담은 걸개그림 그리기와 살풀이 춤 공연, 전교조 노래패와 꽃다지의 공연이

있었다. 문화행사 후에는 성폭력 추방의 염원을 담은 풍선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걷기대회를 했다.

제9기 상담원교육 (보건복지부 2기 교육)



제9기 상담원교육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3강좌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총 27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다. 보건복지부 교육의 수료자는 20명이었다.

기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지난 11월 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가 열렸다. 본 상담소는 기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간사단체로 활동하며 상근자,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애간자 등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기정내에서의 폭력을 고발하고 기정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상담소의 노래패 '노래도적'의 공연과 함께 인치환, 안혜경, 노인가수 등이 출연하였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

운영위원회



96년 운영위원회가 11월 23일 본상담소 회의

실에서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상담소 활동과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이날에는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 그리고 상근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원활동의 활성화, 함께 풀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96년 후원의 밤 -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기금마련 만찬회



11월 15 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클럽
'지리산'

에서 기금마련 만찬회가 열렸다. 최영애 소장과 조영활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만찬회에는 박금자 대표이사와 이종찬 의원, 정금자 여성 개발원장, 이미경 의원 등 40여 명의 내외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활동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상영, 참석자들이 상담소에 보내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매년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후원의 밤 행사가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후원의 뜻을 기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금을 마련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살리는 성문화 만들기1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세계성폭력추방 주간기간 기념 세미나 개최



본상담소 조사연구부 주관으로 12월 3일(화요일 2시부터 5시) 혜화동 우당기념관에서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서울시내 여·남 중학생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소년 성문화를 진단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여 청소년 성문화를 살리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1994년 4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도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2년 5개월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남아 있다. 법은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실제 법의 적용에서 보면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

어느 때보다도 무더웠던 이번 여름에 우리는 폭염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보호해주어도 모자란 소녀가장을 동네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자살기도까지 하게 만들었던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 결국은 출산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사건, 자취하는 여중생을 집주인인 60대 노인이 성폭행한 사건 등을. 이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특별법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하여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놓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성폭력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제정 당시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접한 여성계에서 주장한 주요 항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각 당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또다시 특별법의 개정론이 나오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여 개정해야 할 때이다.

개정해야 할 부분은 첫째,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 개념은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건노출이나



장윤경(본상담소 총무)

신분노출을 꺼려 고소를 어렵게 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일반적 태도를 여전히 나타나게 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명하여 원하지 않는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으로 개념규정을 해야 한다.

둘째, 친고죄에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법에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 신체장애자에 대한 준강간만을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함께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친고죄의 존폐 여부는 성폭력을 어떤 범죄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서 친고죄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 대여성 인권침해 범죄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신고의무제를 신설해야 한다. 본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인 경우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사실조차 은폐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분노, 우울, 대인기피증, 자살 등 후유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특정 전문집단(의료인, 교사 등)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어린이 성폭력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넷째, 특별법상에서 친족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본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의부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성폭력 중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 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 친족 성폭력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던 의부나 양부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별법의 본래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족의 범위를 민법과 동일하게 확대시키거나 최소한 의부나 양부를 처벌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담 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상담소의 사례를 보면 수사절차상에서 보여지는 경·검찰의 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사례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준이 미비한 성폭력에 대한 경·검찰의 인식 및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화간이나 간통으로 사건을 인식하므로 합의종용이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다. 따라서 경·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수사과정중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등의 이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 강화이다. 직장내 성폭력일 경우 퇴사나 해고, 업무능력의 저하, 휴직 등 직장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별법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이중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일곱번째로는 피해자의 절차참여 및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강화이다. 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성폭력 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보다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여덟번째로는 친권유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려 해도 학교문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전학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가해자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학은 불가능하여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친권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권유보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친부, 또는 의부에 의한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의존함으로써 자녀의 피해를 방치해두거나 사건을 묵인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친족피해자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을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기관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홉번째, 성희롱 조항의 신설이다. 특별법에서는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만을 특화시키고,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강간은 일반강간의 범주로 통합시키고 있다. 또한 직장 내의 관계를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동료나 고객, 거래처, 직장알선을 미끼로 성폭력을 행하는 사례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의 관련으로 일어나는 강간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성추행일 경우의 고소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강간과 비교하여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해나 진단서 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직장 내에서의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추행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직장 내 성희롱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열번째로 국가의 예방의무의 명시이다. 현행법에는 국가의 예방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특히 가족이나 친형제들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 가해자들이 대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어렵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예방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여 성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

1994년 4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도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2년 5개월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남아 있다. 법은 최소한 인권을 보호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실제 법의 적용에서 보면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기본취지를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라는 기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간경과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 기본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당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법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열림터 내담자 실태와 대책

현혜순(열림터 실장)

열림터가 94년 9월 개설 이후로 46명의 내담자가 다녀갔다. 입소자들은 어린이, 청소년층이 대부분이다.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유아기의 아이가 친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가 일가족 모두를 데리고 열림터로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열림터 피해자의 약 85%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육체적 손상은 치명적이다.

1. 열림터 피해자 실태

94년 개설 이후 총 46명 내담자 중 피해자는 3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그 가족들이다.

1) 피해유형

강간	친부	12명
	의부	2명
	(사촌)오빠	2명
	데이트	2명
	직장	1명
	동네사람	1명
	모르는 사람	1명
추행	친부	11명
	의부	1명
계		33명

피해유형에서 친족에 의한 피해가 85%를 차지한다. 그것도 아버지가 강간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피해자의 79%를 나타내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또한 강간이나 윤간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열림터 입소자의 대부분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와의 거처분리가 필요 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 연령

표의 연령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를 말한다. 특히 8세 이상 16세 이하의 피해자 19명 중 18명이 친족성폭력 피해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정도가 되었을 때 성추행에서 강간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려왔다.

7세 이하	8세~13세	14세~16세	17세~19세	20세~30세	31세 이상	계
5명	5명	14명	2명	6명	1명	33명

19세 이하의 어린 피해자가 79%를 차지하며 미성년자 26명 중 25명이 친족에 의한 피해자이다. 위 표에서는 주로 청소년층(중학생)에 편중되어 있으나 이들도 역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강간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경우이다. 7세 이하의 유아 성추행도 15%나 차지하고 있다. 성추행의 방식으로는 손가락질 삽입, 손가락 항문 삽입, 키스, 그 외 성적 접촉 등이 있다. 이들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유아시절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자 학력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졸	대졸	기타	계
5명	5명	14명	2명	3명	2명	1명	1명	33명

피해자 학력은 피해연령과 일치한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대부분 근친성폭력 피해자이다. 데이트 강간 피해자일 경우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가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유명한 문필가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4) 피해자와 지지집단과의 관계

어머니 생존	어머니 부재(사망, 가출)
25명	8명

열림터 피해자의 어머니는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25명, 어머니가 없는 경우가 8명이다.

불과하다. 그러나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만하다 해도 어머니가 무력하여 어린 딸들을 보호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친인척 관계 또한 소원한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이처럼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요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5) 가해자 특성

흔히 아버지의 딸에 대한 강간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어머니의 건강상의 문제로 원만한 성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또는 어머니가 불감증 환자라 아버지의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성적 대상을 갖지 못하므로 딸에게서 성적 만족을 찾으려 한다고 가해자의 행위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가족 내 성폭력은 어머니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성적 대상의 부재로 일어난다는 통설은 아직도 존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외도를 일삼고 도박과 외박을 즐기며 외부에서는 사람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일부는 개인적 성향이 극히 내성적이 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혼자서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 내에서만의 폐쇄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딸과의 성적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딸에 대한 성적 의도와 성향은 외적 조건인 부인과의 관계, 성적 대상의 부재, 알코올의 남용이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을 많은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밝혀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구타하고 끝내는 딸을 강간하는 아버지는 억압된 분노와 사회적 고립감과 열등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미약한 통제력을 가장 힘이 약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사랑과 관심이라고 믿는 어린 딸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은 어릴 때 폭력적 가정에서 심한 구타를 받고 성장해왔으며 때로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커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가해자 중에는 결혼 전 강간을 한 경력이 있거나 강간한 여성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구타하고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열림터 피해자의 특성과 심각성

1) 피해자 특성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 통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났으며, 가해자는 힘이 세고 자신은 어리고 약하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책임의 반은 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진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가해자가 다시 부르

면 그 장소로 나갔고, 그 가해자 중 일부를 좋아하기도 한 자신을 '정신나간 아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자신을 성적으로 문란한 인간이라고 비하하거나, 아버지의 성적 행위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책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성폭력을 성관계의 의미로 내면화하여 피해를 입었어도 외부의 도움을 떳떳하게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가족관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마땅한 보호자들이 어린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가족의 봉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예도 많았다.

2) 피해후유증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 지속기간이 길수록, 흥기 등 도구사용이 흥폭할수록,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후유증은 심각해진다.

열림터에 거주했던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을 짊어지는 1년 정도에서 길게는 9년의 긴 세월에 걸쳐 당했기 때문에 장기적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친 강간은 피해자에게 임신, 낙태의 위험부담을 주고 이는 순결상실감과 임신후유증까지 책임져야 하는 참혹한 지경까지 이른다.

순결상실감은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감 결여, 자기비하 등의 열등감이 자신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갖는 왜곡된 성의식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권리보다는 성적 관계를 나눈 부도덕하고 가치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치유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해소할 길 없는 분노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가져오며 결국은 자살시도나 가해자를 죽이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여성에게 성이란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존재이지만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남다르다. 성으로 성인과 관계를 맺어온 어린 피해자는 이성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가해자가 사랑이란 미명으로 피해자를 길들여 온 방식과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러한 양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허위의식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은 상담을 통하여 강간의 의미와 가해자의 강간동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성을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9세 때 당한 피해로 인한 그당시 충격과 상처 때문에 결혼 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일방적인 행위에 과거에 가졌던 분노와 공포가 일어나 성관

계를 맷기가 힘들어 가정불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 사촌오빠에게 몇 차례 강간을 당한 이후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밝힐 엄두를 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장해서 결혼한 후 남편과 성관계를 할 때마다 피해 당시의 경험에 자꾸 떠올라 성관계를 회피하게 되었다.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진행시키려고 해 피해자가 정신착란 까지 일으켜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후유증은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화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장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히다.

3. 장기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방안과 사회적 대책에 관한 제언

1)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열립터 피해자는 수차례의 강간이나 장기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프로그램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정신과와 상담분야의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임시피난처로서의 열립터는 피해자의 위기 개입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물론 적절한 위기 개입단계는 어느 단계보다도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장기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열립터를 퇴소한 피해자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성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왜곡된 편견 등이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치유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임시피난처로서의 기능에서 통합기능의 체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2) 학업문제 해결

입소자들은 대부분이 청소년이므로 학업문제가 대두된다. 일단 입소하게 되면 외부와의 활동이 제약받기 때문에 내담자의 생활환경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외부노출을 막을 수 있다면 가능한 내담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전학을 가능하게 하고 전학과 주소 이전시 주소, 학교노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아버지일 경우도 보호자로서의 친권행사를 보류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차원의 피해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양육문제 해결

고소시 진단서 발급비용과 산부인과적, 정신과적 치료비용에

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해자인 아버지가 구속될 경우 남아 있는 동생들과의 부양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피해자는 소녀가장이 되므로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어머니가 있다 해도, 남편 구속시, 또는 이혼시 경제적으로 무능한 전업주부인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가몹시 힘들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현실적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어린 딸의 피해후유증 치유를 위한 수단강구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이혼이 안되어 있다 해도 모자가정으로 인정하여 모자가정에게 주는 혜택을 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법정기간 보장과

보호관찰제 도입과 친권행사의 박탈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형량이 낮아 일찍 출소할 경우 또다시 위험상황에 빙자되게 된다. 성추행인 경우 피해자는 학령기 이전의 유아일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 형량은 3년에서 5년이다. 가해자가 항소를 하면 형량이 반으로 감형하기 쉬우므로 출소시 어린 딸을 보호할 길이 없다. 출소 후 어린 딸이 성장할 때까지 격리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보호관찰제를 실시하여 이후의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하며 재활프로그램으로 가해자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친의부가 성폭력 가해자임이 확실시되면 피해자의 학업, 전입 등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절차상의 문제시 친권대행자는 피해자 보호시설장이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

5) 피해자 보호시설 위탁모의 성폭력 관련 교육과 의식의 전환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에서는 관련인의 성폭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호시설 관계자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순결을 잃은 여자'로 바라보는 등 피해여성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피해후유증 극복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차원의 총체적 지원체계의 서비스 정도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성문화와 성의식이 바로 선다면 피해여성 또한 성폭력 피해를 일반 범죄피해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후유증 극복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 연구 2

성폭력과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이경미(조사연구부 1실장)

성폭력이 성욕과는 무관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상, 성폭력 발생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폭력성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다루고자 한다.

폭력성과 성폭력의 연관성은 두 가지 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는 폭력성과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서로 공유되는, 혹은 상호증폭되는 지점인지를 밝혀야 한다. 둘째는 그 지점을 넘어서 성과 폭력성이 연결되는 기제를 설명해야 한다.

폭력과 성폭력의 중량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왜 각각 다르게 감지되는지를 문제삼으면서, 성폭력은 성기에 대한 폭력이므로 이를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한 폭력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입장은 성기에 대해서나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폭력과 성폭력의 영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다르게 적용되며 그것이 또한 가해자에게 얼마나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용되는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과 폭력에 일반적인 폭력성이 내재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성에 대한 개념과 성적 사회권력관계가 개입되는 지점에서는 엄연히 다른 그 무엇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요인이 폭력으로 외화되며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하되, 왜 하필 성폭력이라는 형태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특수장치의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먼저 어떤 요인과 기제로 인하여 폭력이 가능하였으며 지금도 가능한가를 보기로 하자. 폭력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는,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조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정치이론가들의 논리이다. 부당한 대우와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서의 폭력이 있는 반면 조종과 관리,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이 있는데, 후자의 폭력에 대한 관대한 대접이 오늘날 이렇듯 남성중심적인 신화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폭력을 관대하게 취급하는 사회적 맥락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남성성, 남성다움의 이미지와도 상통한다.

Ciccone과 Ruble(1978)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자의 남성

다음을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한다. 첫째, 자기 인생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가령 모험심과 야망, 독립심과 용기, 경쟁심 등이 전제된 성취지향적인 행동들과 그 결과들에서 그 남자의 남성다움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영역은 타인을 다루는 방식이다. 공격성, 권력지향성, 진취적인 능력 등이 전제된 지배력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획득하고 휘두르는가에 따라 남성다움을 평가한다. 셋째, 스스로의 정신상태를 다루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다루는가에 대하여 남성다움이 강조된다.

남성다움에 대해서는 성역할과 연결되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남성다움을 가령 여성스러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며 힘과 자신감을 존중하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과감성을 발휘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는 논자도 있다. 남성다움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 폭력성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남성다움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사회와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이므로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 개입되는 폭력성은 용납할 만하거나 심지어 권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다움의 강조는 역설적으로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와 통한다. 여성스러운(feminine) 모든 것을 거부하는 남성다움은 여성스러움을 전적으로 여성다움(femininity)으로, 또는 남성다움과 비교하여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전통적인 여성다움은 희생과 봉사, 정결과 순수, 무지와 순종 등으로 대표된다. 가해자의 가치관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이 폭력성으로 통하는 남성다움에의 지향과 전통적 여성다움의 신봉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폭력과 폭력의 공유점은 개인의 자유의지, 지식, 저항 등을 무시한 채로 자행되는 자율성의 침해라는 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간의 사회권력적인 부분도 합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폭력성이 재생산되는 것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우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상과 가치, 제도와 관습이 복잡한 체계로 만들어져서 유포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폭력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널려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중매체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이미지 전략이다.

대중매체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그 적정선이 적당하게 위반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형적인 역할이 전수된다. 남성의 경우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비단 거친 광고나 폭력영화만은 아니다. 드라마나 가요(뮤직비디오), 뉴스, 나이가 포르노그래피 등에서 폭력은 남성의 전유물로 반영되며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식으로 이미지화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 만들기에 성이 개입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남성의 폭력성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기는 두번째 문화는 군이다.

군에서 남성은 더이상 철없는 소년이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여자처럼 굴어서는 절대 안된다. 군에서 여성적 이미지는 거부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내가 가져서는 안되는 것, 나와는 별개인 그 무엇으로 대상화되고 동시에 가치절하된다. 그런 가운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모든 남성이 다 성폭력 가해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남성중심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성

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남성을 남성다움으로, 여성은 여성다움으로 재단하는 관습은 권력의 현재 질서를 유지하려는 음모와 동일하다. 지금 세계에서 권력은 폭력과 무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성폭력과 폭력성을 연결짓는 중간지점에 전통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으로 생각할 거리가 된다.

도움받은 책

- *Ending the Silence: The Origins and Treatment of Male Violence against Women*, Ron Thorne-Finch, Univ. of Toronto, 1992.
- *Rethinking Ethics in the Midst of Violence: A Feminist Approach to Freedom*, Linda A. Bell,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3.
-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Diana Scully, Unwin Hyman, Inc., 1990.

‘피어라 들꽃’에서 만난 사람들

편집실 정리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대 앞에 있는 카페 ‘피어라 들꽃’에서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레즈비언 모임 ‘끼리끼리’ 회장 해솔씨와 회원 그레이스, 천리안 통신 여성학 동호회 시집인 이명신씨와 동호회원 박형숙씨, 홍보실장 이숙경, 나눔터 기자인 이수지, 이진희, 윤수연, 나눔이 유현숙, 위기센터 노주희 실장 이렇게 1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토론회는 나눔터 기자들이 기획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요즘 대학가에 ‘성정치’ 강좌가 성행리에 열리고 서동진씨를 비롯한 게이운동가들이 동성애이론을 확산시키면서 ‘동성애’는 대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눔터 기자들도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갖고 토론회를 갖자고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갖기 전에 우리는 동성애—특히 여성간의 동성애자들인 레즈비언에 관한 기초자료들을 함께 읽고, 끼리끼리 사무실을 방문해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막연했던 호기심은 레즈비언은 누구인가,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실제 그들

의 모습은 어떨까? 레즈비언 집단이 받는 사회적 압력이나 불이익,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 남성에게 받는 성폭력의 피해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했던 레즈비언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용납하려 들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들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일까? 그건 요즘 들어 레즈비언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성역할의 문제에 대해 래디컬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으로서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저 호기심과 경멸의 대상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해솔씨와 그레이스와의 만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언어로 말하는 레즈비언을 이해솔씨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자.

이해술씨의 이야기

제가 지난 1년 동안 ‘끼리끼리’ 회장을 하고 요즘 레즈비언 카페 ‘레스보스’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끼리끼리 같은 곳에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모임이나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반면 레스보스는 그야말로 카페이기 때문에 정말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특히 SBS에서 방송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4,50대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모습은 남성적인, 성전환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이드신 분들일수록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운동 쪽엔 관심은 전혀 없고, 그분들도 레즈비언이면서 여전히 이성애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같은 여자여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커플일 경우에, 누가 남성역 할이고 누가 여성역할인가라고 했을 때, 우린 그런 것 없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커플인데도 남자 여자 없냐, 섹스할 때 누가 리드하느냐, 집안일은 누가 하느냐, 같은 레즈비언이면서도 그렇게 사고들이 다양하세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나이드신 분들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레즈비언 카페→자매애 인데, 왜 레즈비언 관계에서 저렇게 남자 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한쪽이 철저하게 부치여야 하는지라는 반론도 많이 재기하죠. 지금 시점에서는 레즈비언 문화의 다양성들의 실체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능성은 믿고 있는 것은,끼리끼리에서도 반 정도는 정말 자기는 남자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은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성으로 살고 싶다, 조건이 되면 성전환수술 하고 싶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남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끼리끼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얘기하게 되고, 고민을 털어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런 남성성에 대한 지향을 많이 버리시고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시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저희는 믿고 있고, 찾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의 가장 첫번째는 자기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소망하는 거죠.

부당한 현실, 부당한 대우 속에서 자신이 위치하고 싶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해도, 남성이 돈을 많이 받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자기가 서고 싶은 거죠. 그렇게 기득권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기득권을 철폐하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기득권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걸 싸우기 위해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보단.

해솔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레즈비언이란 누구일까에 대해 아직은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임을 알았다. 기존의 성 역할과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여과 없이 수용해서 레즈비언끼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남녀의 불평등한 위치에 반기를 들고 여성간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레즈비언간의 평등한 관계를 꾀하는 사람들, 레즈비언임을 선택했으나 아직 남자하고 든 여자하고든 한번도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성관계가 포함된 생활 전반을 여성하고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끼리나 레스보스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다양했다. 정말 과연 누가 레즈비언일까?

해솔씨는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나가는 과정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어떤 내용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기존의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 길들여진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말이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중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성애자들의 결혼과는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른 예식이 필요하며 그 예식을 ‘결혼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는 것이다.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인끼리끼리가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그런 시도들이 우리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레즈비언페미니스트들이 부치/펩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관계의 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은 우리가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남성중심 문화에 도전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이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나눈 이야기는 지면에 옮긴 것보다 훨씬 많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굽지 않고 우리 역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 역시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불리 그들을 또다른 잣대로 판단하게 되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되었다. 짧은 지면을 통해 우리가 느꼈던 것을 모두 옮기기 어렵지만 그날의 토론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끼리끼리의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문화와 삶의 스타일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본다.

- 끼리끼리 – 레즈비언의 권익을 위한 단체
- 레스보스 – 레즈비언 카페(전화 : 711-7878)
- 부치 – 레즈비언 중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
- 펩 –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

결혼피로연에 다녀와서

임형태(승실대 전산과 박사과정)

며칠전 동기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다.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선배나 동기들로부터
여러 차례 결혼피로연
이 얼마나 무서운(?)
지 이야기로만 많이
들었었다. 그날도 신
랑 신부는 몇 가지 게
임들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신랑 신

부가 폐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로연을 오래 할 수 없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세 가지였다. 첫번째로는 일명 '청기백기'라는 것을 했다. 난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익히 아는 것인 듯했다. 신부가 신랑의 바지지퍼를 반쯤 내린 다음 '청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처럼 사회자의 말에 따라 신랑의 자크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 하는 것이었다.

두번째로는 눈이 2, 코가 4, 입이 6, 가슴이 8, 신랑의 거시기가 0일 때 사회자가 구구단을 문제로 내면 그 답의 끝자리수에 해당하는 곳에 신부가 뾰뽀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사회자는 끝자리가 0이 되는 것을 많이 했다.

세번째로 동기들은 오이의 끝을 꺾어서 남자의 거시기처럼 만들고 당근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불알처럼 오이의 끝에 꽂아놓은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신랑은 그것을 정확히 자신의 거시기 위치에 잡았다. 동기 한 명이 마요네즈와 케첩을 그 위에 뿌렸다. 사회자는 신부에게 그것을 5초 안에 입으로 깨끗이 빨아먹도록 시켰다. 신랑 신부 모두 무척 쑥스러워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기도 했고 신랑은 발바닥을 맞아야 했다. 그날은 그 정도밖에(?) 못했다.

그날 신랑 신부가 피로연장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동기들은 건방지다면서 빨리 데려오라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세 가지밖에 못하자 동기들은 자기들이 착해서 많이 안한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제대로 못하면 그날 신혼여행을 못 가게 할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못 가게 한 경우를 얘기해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마치 신랑 신부는 반드시 피로연에 서 '쇼'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동기들은 신랑 신부에게 쇼를

강요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졌다. 첫날 밤 쑥스러우니까 피로연에서 그런 '야한' 게임을 통해서 덜 쑥스럽게 해준다고 한다.

피로연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내 동기들, 즉 신랑의 대학동기들이었다. 여러 가지 게

임을 시키면서 신부에게 이제 결혼했으니 신랑을 하늘같이 모시라는 동기들의 경고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한마디로 피로연은 그 어느 곳보다 남성중심적인 분위기인 것 같았다.

그날 결혼한 내 친구는 피로연을 안하려고 했으나 동기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다. 웬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동기에게는 꼭 야한 짓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기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이것은 결혼당사자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 함을 하지 않은 친구의 신부를 심하게 면박주어 자살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동기나 친구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피로연이나 함들이를 꼭 해야 한다거나 쇼를 꼭 해야한다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게 좋은 풍속일까?

올해는 내가 결혼을 한다. 난 한마디로 피로연에서 그딴 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런데 피로연을 하라는 요구를 내가 거절하면 두고두고 동기들에게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나는 결혼 당일 두 주인공을 바보로 만들어 공허한 웃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진정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주고픈 사람들과 함께 모여 나와 내 배우자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내다보는 뜻깊은 시간을 꼭 갖고 싶다. 피로연이란 주인공과 하객 모두가 즐겁게 그날을 축하하는 자리여야 할 것이다.

노인의 성

윤기현(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약 7년 전 심리학을 수강하던 한 학생이 보고서의 일부로 공원에서 만난 노인과의 대화를 적어 제출했다. 수강생은 그 노인을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75세의 할아버지가 매월 서너 차례씩 공원에서 만난 여인들과의 밀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이성교제에서 용돈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3년 전 할머니와 사별하고 나서 재산을 세 아들에게 분배해 준 것을 후회하고 계셨다. 수강생의 상식으로는 그 나이에 성욕이 남아 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노인들의 성적 능력을 의심하였기에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례를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더니 대부분 반신반의하면서도 별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인은 그런 성욕이 있더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 노인답지 않은가라는 학생들의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다른 학생은 친구의 할아버지가 소위 야한 비디오를 빌려보신다는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노인도 그런 성적 흥분을 애기시키는 그 무언가에 열중하는 것은 주책 없다는 편장을 들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상기의 두 사례를 토대로 과연 학생들의 주장처럼 노인이 성욕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인간답지 못한 처세였는가? 우리나라에는 물론 서구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도 노화과정과 관계되는 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이 존재해왔다. 나이든 남성들은 성욕이나 성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성관계에서 만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 등이 그 고정관념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왜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선 고대사회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건강전문가들은 남녀 모두에게 성행위를 통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액체가 고갈되면서 신체가 약해진다고 가르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젊은 시절에 절제를 해야 장수하게 되므로 젊은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섹스를 삼가도록 권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

들의 성행위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간혹 나이가 들어서도 섹스를 즐기거나 성적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젊은 시절부터 색광이었을 것으로 보통사람과는 다르게 여긴다. 그리하여 삶의 정수나 성적 활동을 젊음이나 강인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인 반면에 노인은 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편견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강인함이 남성보다 못한 여성에게도 적용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래까지 정숙한 여성은 성적 만족을 원하지도 않으며, 존경받는 여인은 성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 문화권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였을지라도 여성의 수질하여 옆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며, 또 그런 까닭에 나이가 든 여성의 재혼은 더욱 못마땅한 행위로 보였다. 곧 노인의 성욕은 생물학적인 차원을 기저로 무시되었으며, 여성의 성욕은 순전히 사회문화적 차별 때문에 무시되어 왔다.

노인의 성욕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근대적인 요인은 성을 연구할 때의 방법론적 문제점이다. 성관계의 질을 양으로만 평가하는 모순이 바로 그것이다. 성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관계는 거의 대부분 성행위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등으로만 측정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석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한 질문 자체는 인간관계를 정서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의 성관계를 가지는가, 오르가슴을 어느 정도 자주 경험하는가 등의 질문은 인간관계의 질을 평가하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기능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년에 한 차례의 성관계도 갖지 않으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사실상 나이가 들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남녀 모두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를 경험한다. 성적으로 남성들은 발기능력이나 사정능력이 젊은 시절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여성들은 오르가슴의 강도가 예전보다 못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는 성교와는 다른 행동들에서 만족을 얻으며 또 그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노인들의 경우, 성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질은 매우 주관적이며, 빈도, 강도, 지속기간 등의 객관적인 지표와 무관하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노인들의 성을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세기 후반 사람들은 전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성적 관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노인들도 야한 비디오를 볼 수도 있으며, 홀로 된 노인들은 또래의 이성들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 욕구도 지니고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자위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달래기도 한다. 신체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유지되는 한, 성욕은 식욕과 다를 바 없이 죽음의 순간까지 남아 있다. 식욕이 없다고 음식을 계속 거부하지 못하듯이 성욕이 줄어들었더라도 성적 관심을 버리지 못한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연령을 토대로 성욕의 표현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성별이나 인종 등을 토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그들에게 ‘강간할 권리’를 주었는가?

조혜련(이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나 1학년 때 이화광장에서 그들은 자제를 요청하던 이대 총학생회장의 머리에 막걸리를 쏟아부었다.

나 2학년 때 이화광장에서 그들은 운동장으로 영산줄다리기 줄을 옮기려는 이화인을 방해하고 이대 총학생회장을 구타했다.

나 3학년 때 그들은 행사를 진행중이던 운동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동제 행사진행요원인 지킴이를 구타했다. 그리고 지킴이 한 명의 다리가 부러졌다.

나 4학년 때 이화광장에서 그들은 자제를 요구하는 교수님의 차 위에 올라섰다.

내가 5학년이 된 지금 그들은 행사가 진행중이던 운동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은 곧 전쟁터가 되었다.

매년 5월의 푸르름 속에 열리는 이화 대동제에는 이화인들이 준비하는 행사 이외에 연례행사와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K대생의 집단난동. 매년 그들은 500여 명씩 무리를 지어 K대의 응원기를 부르며 이화광장을 점거하고, 이들에 의해 대동제 폐막제 행사인 영산줄다리기는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된다.

올해 이화여대 여성위원회는 대동제 전부터 그들의 행동을 집단적인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대동제 기간 동안에는 대자보를 통해 자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무리지어 이화광장을 점거했고 행사가 진행중이던 운동장을 침탈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대에서는 ‘집단난동 규탄집회’를 하고 K대로 항의집회를 가서 K대와 K대 총학생회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예년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왜 그들의 행동이 성폭력인가?

고대가 이대 대동제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남성이고 이대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남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물리적이고 상징적인 남근을 통해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이것은 사회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K대는 이러한 남근을 통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남성들이기에 이화라는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용감할 수 있다. 물론 K대는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남자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물리적, 정치권력상으로 우월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문화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집단난동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의 보호와 소유 속에서 안전하게 존재하며 그들이 참가하고 있었던 공간은 남성성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여성일지도라도 문화적으로는 남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성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된 하에서 민족고대생들은 이화라는 공간을 사고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상공간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공간에 들어와서도 구타나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남성의 공간, 혹은 남성이 소유하고 보호하는 공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집단난동을 이화라는 여성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의식이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본질인 것이다. 매년 5월 이화대동제에서 벌어지는 K대생들의 집단난동은 주체가 남성이고, 난동의 대상이 여성이며, 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리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집단에 의해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기해진 의도성이 짙은 위협행위이며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폭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화가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 특히 K대측의 통신글을 보면 편협한 페미니스트들의 농간이니. 이대 총학생회의 행사보다 K대생들이 벌이는 갠판이 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에 이대 총

학생회가 질투가 나서 조작한 사건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K대생들은 성폭력이라는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이것은 이 사회가 기진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회는 성폭력을 성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한다. 즉 성적 행위나 그에 준하는 행위가 없으면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사회통념상으로만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은 성폭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지 성기십입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수잔 브라운 밀러는 강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상태에 끌어드는 의도적인 위협행위’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여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의지를 거슬른 채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외부적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으로 행사되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성들을 공포와 위협상태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기본적인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다. 성폭력을 성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이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이라고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다양하며 기존사회가 가진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또한 얼마나 성기중심적인가에 대한 담론형성을 시작하고자 한다.

흔히들 대학이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에 있어서 대학사회는 방만하기는 할지언정 진보적이지는 않다. 지금도 많은 대학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낭만적 사랑이라는 각본에 왜곡된 남녀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인의 경우 너무나 모순된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해박한(?) 용어규정은 하고 있지만 봉건적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건들은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인식될 뿐이지 대학과 사회 전반에 문제제기하는 담론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또한 대학 사이에 올바른 여성주의 소통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여성주의나 성정치활동을 하는 학생단체와 연결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열려진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담론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바로 여성주의와 학내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들꽃모임이다. 이 모임은 K대생들의 집단난동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수다모임과 문화행사의 형태로 이대 앞의 ‘피어라 들꽃’이라는 카페에서 매주 진행될 것이다. 이미 9월 5일 학교별 상황을 소통하는 자리로 시작되었고 9월 12일에는 ‘나는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주제로 수다모임. 9월 19일에는 rock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대 앞 ‘올로’라는 락클럽에서 남성성을 배제한 여성적인 락의 밤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가능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대학 내 성폭력을 주제로 동시다발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면서 대학사회에서의 성폭력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려고 한다.

더이상 단발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그 이슈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제는 이슈가 아닌 담론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나누고 여성들의 연대를 이룩한다면 어쩌면 너무나 쉬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첫 출발점을 우리는 들꽃모임에서 시작하려 한다.

1995년 박재호 감독에 의해 선보여진 영화 '내일로 흐르는 강'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관에 정면도전을 함으로써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게이필름', '최초의 동성애 영화'라고 평가되는 등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다룬 시험영화라는 데서 영화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동성애문제를 담론화시켰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주내용으로 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이 영화는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가족관에 의구심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성애적 가족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두개의 부제 '아버지' (1부), '가족' (2부)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가족을 대표했던 '아버지'라는 전통적 상징과 기준의 틀을 과감히 깨부술 수 있는 새로운 가족형태(동성애적 가족형태)를 분리하여 '전통적 가족형태'와의 단절을 꾀한다.

'내일로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족에 대한 관념은 사회가 변하고 세대가 변함으로써 조금씩 달라져 오긴 하였다. 영화 1부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집 장가 보내고, 아들을 얻기 위해 네번째 부인(주인공 정민의 어머니)까지 두었던 박한섭에게 장남이 독립을 하겠다고 하자 박한섭은 "세상이 말세지! 부모를 내버려두고 저희들끼리 나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혈연관계에 의해 묶여진 정민의 가족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연속적 굴레'에서의 이탈을 생각하게 되고, 그 굴레의 독재자였던 박한섭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슬픔보다는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비로소 이들은 '서로 몰라도 좋은 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1부에서는 결혼이 사랑의 결합이 아닌 아들을 낳기 위한 생식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2부에서는 성을 떠난 인간 대 인간

'내일로 흐르는 강'이 말하는 가족

이진희(나눔터 기자)

의 본연적 사랑에 그 중심을 둔다. 1부에서는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을 느낄 수 없었던 정민이 2부에서는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 그의 배우자인 승걸을 통해 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1부와 2부는 내용연결의 단절을 보이는 듯 하면서도 두 가족 형태를 교묘하게 비교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올바른 가족형태'라 규정

지어 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가부장이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에 편입되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박한섭의 가족구성원이 된 명희, 명수(정민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의 불행한 주변인적 삶. 기대는 많이 받고 자랐지만 가족들의 반목과 갈등 속에서 자란 정민의 퇴행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어른이 되어서까지 과자를 입에 물고 다닌다든가, 가족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기피, 여성에 대한 무관심) 등은 기존의 가족관에 대한 부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기존 가치관의 파괴와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있는 가치관의 수용을 선명하게 대비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가족형태라고 믿어왔던 가족제도만이 계속적인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영화의 의도를 보여준 셈이다. 어차피 이에 대한 판단, 수용과 거부는 관객의 몫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이 영화는 부정하지도 못하고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한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한번쯤은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흔히 세월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한다. 강물은 끊임없이 각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를 받아들여야만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물줄기를 막아서도, 고이게 해서도 안된다. 바로 지금이 정지된 듯한 강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자원활동가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후원하는 든든한 식구들입니다.

상담소는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10명의 상근자들, 그리고 이사,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순수 민간단체로서 5년여 동안 수많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원활동가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대학생, 주부에서 연구, 의료, 법률, 경찰 등 각계의 전문가에 이르는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는 정말로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에 뜻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십시오.

담당 : 김지혜 실장 ☎ 576-5513~4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원활동 영역

상담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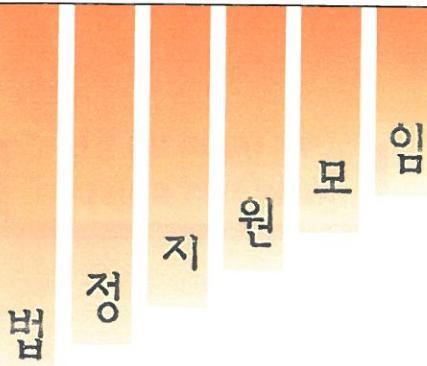
일정한 교육과정(여성학/상담이론 및 실제)을 거친 후 1주일에 1회 상담원으로 활동

나눔이사무보조 지원활동가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 연 2회 MT, 여성학모임, 성문화 읽기, 노래도적 등의 소모임에 참가

자립이야간상담원

일정한 교육과정(여성학/상담이론 및 실제)을 거친 후 야간상담원으로 활동. 각종 교육과정과 소모임에 참여



상담지원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비전문가들의 집단인 법정지원모임은 1994년 3월 18일을 1차 모임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60여 회의 모임을 가졌다. 법정지원모임은 지킴이(야간상담원-당시는 상담보조요원), 나눔이(사무보조요원), 상담원 등의 상담소 식구들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예비법률전문가(법대생)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에 지킴이나 나눔으로 활동하지 않는 법대생들에게도 문을 개방하였다. 총 인원은 상담원이 1명, 지킴이(야간상담원)가 6명, 나눔이가 3명, 간사가 2명, 소속 없는 법대생이 2명, 담당실장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이다.

법정지원모임은 상담과 재판사건 지원을 위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성폭력관련 법률을 공부하며 재판사건을 지원하여 재판상황을 모니터하고, 진정서를 쓰는 등 피해자가 재판진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연대사업을 해온 재판사건이나 상담소에 상담중인 재판사건들을 재판현장에 나가 진행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작은 공부모임이 현재는 신규회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간사는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받고 활동하던 사람이 담당하여 진행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특강을 유치하기도 한다. 또한 96년에는 내담자 지원용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하고 법률부분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또한 월 2회 모임을 통해 재판상담사례를 연구

하고 지원나갔던 사건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법정지원모임의 활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내용을 기록하고 모니터하는 것을 통하여 적절한 자료를 판사나 검사에게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거나 지방재판인 경우,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가해자가 처벌되어 피해자가 공포에서 벗어나 환한 웃음지으며 사회생활에 복귀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실장 노주희에게

연락주십시오.

모임시간 : 每週 (화) 오후 7:00~9:00

재판지원은 시간 가능한 사람이 지원해 나가게 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느 누구라도 성폭력 피해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어린이와 예비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비디오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제시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담은 성교육의 장, 이 두 편의 비디오를 활용해보십시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비디오의 내용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질적인 상황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다.

대상 : 여고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격 : 1만 8천 원

내 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의 내용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어린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상영시간 : 30분
가격 : 1만 8천 원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만 원을 등기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2-576-7128
- 온라인 구좌번호
 - 국민은행 009-01-1176-632
 - 농협 037-01-194301
- (받는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담소로 전화하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529-4271~2
아간상담, 위기센터 573-1888
일반사무전화 576-5513~4, 576-7128
팩스 576-7127 / 천리안 ID : ksvrc
인터넷 주소: ksvrc @ chollian.dacom.co.kr

우리 상담소의 심벌 는
'여성들의 자매애'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벌인 는 여성을 나타내는 우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서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지원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애'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7년 4월 개소 이래 지금까지 1만 2천4백 여 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자를 돋고 있으며,

24시간 위기상담을 받아

증거확보와 의료, 법률조치를 취하는 위기센터,

열림터(보호시설) 등의 시설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기다립니다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후원금을 기부하실 분은 아래의 구좌로 입금하시고 전화주십시오.

☎ 576-5513~4 / 담당: 정진욱 실장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알립판

나눔터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계간 나눔터는 성폭력상담소의 소식지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담당: 이숙경 실장 ☎ 576-5513~4)

기부금 내주신 분

권성희 김미라 김병후 김삼화 노미혜 (주)녹십자 문해란 박금자 소은희 송길자 윤장순 이길여
이명숙 이미경 이봉학 이종걸 임종인 정성광 정우제 정금자 조영황 최보문 한국쉐링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9기 상담원 교육 수료 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윤정 고재택 강영진 강준원 김옹호 강은희 강희선 김라미 김병준 김윤영 김은희 김현주
김희진 문진영 박명희 박유미 박혜리 서미영 서현정 신민정 안정자 양승빈 윤경화 윤순영
이기영 이영준 이진경 임성민 전영림 정관희 정보선 정형옥 조은경 조성근 최동석 최은영
최은희 최지녀 하세연 한경숙 한지원 황윤정 황혜경 홍영조

시민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의 상담 활동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 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 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 교육자료, 연구물 간행 등의 홍보·출판활동, 사례분석, 실태조사, 자료의 연구, 수집 등의 조사·연구활동, 나라 안팎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상담활동과 나눔이 지킴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 회원, 기증 등과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쇠를 만들어 갑니다.

이사
강기원, 민병진, 박금자, 오세민, 윤장순, 이종실, 장동철, 최영애, 주애주

감사
비지히, 세무사 차재능, 회계사

자문위원
상담 ······
기독교회/서광선, 심리학/박애선, 이창호, 조혜자, 이해성, 심리학/장연식, 여성학/한정자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 김삼화, 박찬운, 신기남, 이명숙, 이상경, 이종걸, 이향아, 임종인, 장재호, 장출우, 정갑생, 조연황, 홍선성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김신봉, 권일훈, 문국진, 서중석, 이경룡, 이윤성, 이원태, 초영식, 황적준, 산부인과/김주필, 김현식, 남소자, 문영규, 민웅기, 박경자, 박금자, 박소현, 보안당, 박종민, 원경목, 윤경, 이경희, 이길여, 이옥주, 임용택, 한종수,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청소년과/박영숙, 최보문, 조은희, 신경정신과/김광일, 김동순, 김병후, 김정일, 남정현, 양정순, 윤애리, 이나미, 정동철, 최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록, 문혜란

연구
교육학/김인수, 사회학/김준호, 심병희, 조형, 여성학/이재경, 정필화, 조주현,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 정대현, 통계학/이용재

홍보 출판
동시통역/김지명, 시학/박진숙, 시사민평기/최정현, 신문방송학/김용숙, 최선열, 언론인 김철기, 전여옥, 조성숙, 여성학/박혜란, 오숙희, 연극인 김지숙, 순숙 출판/강학중, 이인자

대표이사 ······
소장 ······
최영애